

원인불명의 화재사고에서 발화지점이 공작물 내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작물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18208 판결 (파기환송)

[사실관계]

- 원고(보험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과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건물(296세대) 및 부속설비, 가재도구, 집기비품에 관해 피보험자를 단지 내 각 세대 소유자로 하는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피고(보험사)는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01호의 세대주(A)와 피보험자를 A와 배우자(B). 동거친족

및 미혼 자녀로 하는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가 포함된 종 합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01호는 B 소유(A의 아내)인바, 위 아파트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 세대내부가 전소됐다. 이와 함께 같은 동 1002호, 1102호, 1201호 등의 건물 및 가재도 구 등이 소손되고 거주자들이 다치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
- 원고는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기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했다. 원고는이 사건 화재가 위 배상책임담보의 피보험자인 B가 점유 및소유하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B는 민법상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소유자로서 이웃 세대 거주자 등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들의 직접적청구권을 대위 행사해 피고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한 것이다.

[원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2. 15. 선고 2016나28599 판결 : 원고청구 인용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01호 내부에서 발생, 이웃으로 번진 것으로 내부 소실이 심해 최초 발화지점 및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B가 1001호를 점유 및 소유하며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이상 이 사건 화재는 B가 위 1001호 내부의 공작물에 관해 화재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통 념상 갖추어야 할 방호조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 화 재는 B가 이러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

로 추정했다. 따라서 B가 이 사건 화재의 피해자들에게 그 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 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 의 하자'라 함은 그 공작물 자 체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 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

은 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4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01호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01호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사실이 먼저 증명돼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 과 발화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위 1001호 및 내 부 공작물에 공작물로서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 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B가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01호를 점유 및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화재는 B가 위 1001 호 내부 공작물에 관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민법제758조 제1항이 정하는 손해배상책임에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례평석]

기 시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원인불명의 화재사고에 대해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공작물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발화지점이 공작물 내에 있다는 사실만으

로 공작물에 하자가 존재하는 지 여부다. 또한 그로 인해 화 재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원심은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 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이상 공작물에 대 한 하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 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 정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 법원은 발화지점이 공작물 내

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작물의 하자 및 그로 인한 화재 발생을 추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고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대법원이 일관적으로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

공작물의 하자란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춰 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 이므로 공작물은 특정돼야 한다. 그리고 특 정된 공작물에 어떠한 하지가 존재하는지 증 명돼야 한다. 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 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 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 39548 판결 등 참조).

3. 문제는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어느 공작물에 어떠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그렇기에 종래 공작물의 하자를 추정하는 사례도 있었다(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2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아파트 내부에서 발생한 것은 명확하다(구체적으로 어느 공작물에서 발화했는지는 미상). 이 사건 원심도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있었던 점에 착안해 이 사건 아파트 내부의 불특정 공작물에 어떠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작물의 하자란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춰야 할 안 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작물은 특정돼야 한다. 그리고 특정된 공작물에 어떠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중 명돼야 한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서는 어떤 공작물에 어떤 하자가 존재하는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단지 발화지점이 아파트 내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작물에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그로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921 판결 등 참조).

적어도 하자의 존재는 증명돼야 하고 인과관계도 인정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타당하다.

4. 원인불명의 화재사고라도 '공작물 책임'과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 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 물의 보존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 증해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사실상 임차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은 공작물 책임과는 다르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글_ 박기억 변호사



박기억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보험분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에서 위원(보험편)으로 근무